

행정자치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감경 처분에 대한 재심사 미청구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녕군, 거창군

관 련 자 ① 창녕군 ○○면(전 ○○○○실) 지방○○○○○(전 ○○○○)
○○○

② 거창군 ○○과(전 ○○○○실)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2. 7. 26.부터 2014. 12. 31까지, 지방○○○○○ ○○○
는 2014. 7. 22.부터 2016. 1. 3.까지 각각 ○○ 관련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르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과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창녕군,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창녕군 등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등을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중징계 처분 요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 등 경징계 처분으로 부당하게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 재심사 등을 청구해야 함에도 청구하지 않았다.

[표] 최근 3년간 재심사 미청구 현황

소속	직급	성명	수사기관 통보내용	행정기관 처분 내용	
				처리일	처리결과
창녕군	지방○○○○○	○○○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중징계 요구)	14.4.3	감봉2월
거창군	지방○○○○○	○○○	운전직 음주운전 면허정지 (중징계 요구)	14.8.1	감봉3월

※ 제출자료 재구성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감경이 불가함에도 감경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